

사실증명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장

증명종류	[]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[]외국인등록사실증명
위임하는 사람 (발급대상자)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	
용도		제출처
위임받은 사람 (신청인)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	전화번호	
	주소	

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[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· 외국인등록사실증명]의 발급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하는 사람

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출입국관리사무소장 · 출장소장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-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위임장은 작성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.
-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